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7. 10. 30.(월)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서면회의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에 의거, 의결사항 ‘가’, ‘나’, ‘다’, ‘라’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됨

② 의결사항

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7-38(서)-226)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에 관한 규정」(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2017년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나.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7-38(서)-227~230)

-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 및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한국방송공사 등 4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

< 과태료 부과 >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3제4항제2호	500만원
(주)엠비씨플러스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제2호	3,000만원
(주)제이티비씨플러스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5항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1,060만원
(주)환경티비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가목	1,250만원

다.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7-38(서)-231~234)

- 「방송법」 제74조 제1항·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1조에 따른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주)에스비에스 등 4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

< 과태료 부과 >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주)에스비에스	「방송법」 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6항제1호	1,050만원
(재)소상공인 방송정보원	「방송법」 제74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2호	50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방송법」 제74조제1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2호	500만원
(재)한국기원	「방송법」 제74조제2항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6항제1호	350만원

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7-38(서)-235)

- 방송광고판매대행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규모를 정하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